경상북도체육회 회원종목단체 가입·탈퇴 규정

제정 2021.09.24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본회정관 제6조 및 제10조에 따른 종목단체의 경북체육회(이하 "체육회"라 한다) 가입 및 탈퇴의 절차와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.

제2조(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1. "가입"은 정관 제8조에서 정한 권리 및 의무사항을 이행할 것에 동의하여 체육회에 가입하는 것을 말한다.
- 2. "탈퇴"는 체육회가 회원으로 가입을 승인한 종목단체가 정관에서 정한 회원관계에서 이탈하는 것을 말한다.

제3조(가입신청서류) ①체육회에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종목단체는 매 회계연도 11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.

- 1. 가입신청서(별지 제1호 서식)
- 2. 단체 소개서(연혁, 종목설명, 활동개요, 조직 등)
- 3. 임원 명단(개인별 취임승낙서 및 이력서 포함)
- 4. 단체장의 신원진술서(별지 제2호 서식)
- 5. 단체의 규약 및 제 규정
- 6. 회원가입을 의결한 대의원총회 회의록
- 7. 경기개요 및 경기규칙
- 8. 선수 및 팀(스포츠클럽 포함) 등록 현황
- 9. 시·군종목단체 및 산하연맹체 설치 현황
- 10. 경기대회 및 동호인대회 개최 실적
- 11. 전년도 사업실적 및 해당년도 사업계획서
- 12. 전년도 수지결산서 및 해당년도 수지예산서
- 13. 해당 단체의 중앙경기단체에 관한 참고자료
- ②제1항 제13호에 해당하는 연맹이 없는 종목 단체는 자료의 제출을 예외로 한다.

제4조(정회원단체의 가입요건) ①체육회에 정회원단체로 가입하고자 하는 종목단체는

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한다.

- 1. 도를 대표하는 해당 종목 유일의 단체일 것
- 2. 종목이 「국민체육진흥법」제2조, 제1호에 따른 체육의 요건을 갖추었을 것
- 3. 도를 통할하는 권위와 지도력이 인정되는 종목단체일 것
- 4. 12개 이상의 시·군종목단체가 해당 시·군체육회에 가입되어 있을 것
- 5. 제4호의 시·군종목단체가 주최하는 대회가 연 1회 이상일 것
- 6. 국제올림픽위원회(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) 또는 아시아올림픽평의회 (Olympic Council of Asia)로부터 국제경기연맹(International Federation) 및 아시아경기연맹(Asian Federation)이 승인을 받은 종목일 것(종목의 특성에 따라 예외로 할 수 있다)
- 7. 해당 종목의 보급도와 경기력 발전성이 인정될 것
- 8. 도체육회의 정관 및 '회원종목단체규정'에서 정한 바에 따라 종목단체의 규약이제정되어 있을 것
- ②올림픽종목은 제1항 제4호와 관련하여 시·군종목단체가 6개 이상 조직되어 있어야한다.
- ③제1항의 요건이 충족될지라도 체육회가 정회원단체로 가입시킬 필요성을 충분히 인정하여야 한다.
- 제5조(준회원단체의 가입요건) ①체육회에 준회원단체로 가입하고자 하는 종목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한다.
 - 1. 도를 대표하는 해당 종목 유일의 단체일 것
 - 2. 종목이 「국민체육진흥법」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의 요건을 갖추었을 것
 - 3. 도를 통할하는 권위와 지도력이 인정되는 종목단체일 것
 - 4. 9개 이상의 시·군종목단체가 해당 시·군체육회에 가입되어 있을 것
 - 5. 제4호의 시·군종목단체가 주최하는 대회가 연 1회 이상일 것
 - 6. 국제올림픽위원회(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) 또는 아시아올림픽평의회 (Olympic Council of Asia)로부터 국제경기연맹(International Federation) 및 아시아경기연맹(Asian Federation)이 승인을 받은 종목일 것(종목의 특성에 따라 예외로 할 수 있다)
 - 7. 해당 종목의 보급도와 경기력 발전성이 인정될 것
 - 8. 체육회의 정관 및 '회원종목단체규정'에서 정한 바에 따라 종목단체의 규약이

제정되어 있을 것

- ②올림픽종목은 제1항제4호와 관련하여 시·군종목단체가 4개 이상, 아시안게임 종목은 1개 이상 조직되어있어야 한다.
- ③제1항의 요건이 충족될지라도 체육회가 준회원단체로 가입시킬 필요성을 충분히 인정하여야 한다.
- 제6조(인정단체의 가입요건) ①체육회에 인정단체로 가입하고자 하는 종목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한다.
 - 1. 도를 대표하는 해당 종목 유일의 단체일 것
 - 2. 종목이 「국민체육진흥법」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의 요건을 갖추었을 것
 - 3. 도를 통할하는 권위와 지도력이 인정되는 종목단체일 것
 - 4. 5개 이상의 시·군종목단체가 해당 시·군체육회에 가입되어 있을 것
 - 5. 제4호의 시·군종목단체가 주최하는 대회가 연 1회 이상일 것
 - 6. 해당 종목의 보급도와 경기력 발전성이 인정될 것
 - 7. 도체육회의 정관 및 '회원종목단체규정'에서 정한 바에 따라 종목단체의 규약이 제정되어 있을 것
 - ②제1항의 요건이 충족될지라도 체육회가 인정단체로 가입시킬 필요성을 충분히 인정하여야 한다.
- 제7조(심의절차) ①가입 및 탈퇴에 관한 심의절차는 정관 제10조에 따른다.
 - ②도체육회에 회원으로 가입하려는 단체는 인정단체로 가입하여야 한다. 다만, 올림픽 종목과 아시안게임종목은 준회원단체로 가입할 수 있다.
 - ③준회원단체는 준회원단체 승인일부터 만 3년이 경과하여야 정회원단체 승격 심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, 체육회는 승인조건 이행여부를 반드시 심사해야 한다. 인정단체의 준회원단체 승격에 따른 경과 기간과 심의 요청 또한 같다.
- 제8조(등급 및 가입심의) ①도 체육회는 정회원단체, 준회원단체, 인정단체의 가입요건을 매년 심의한다.
 - ②등급심의에서 정회원, 준회원단체가 제5조 또는 제6조의 가입요건에 해당할 경우에는 해당 단체가 되며, 본도 실정을 감안하여 적용할 수 있다.
 - ③도체육회는 등급심의를 위하여 외부 전문가를 비롯한 자체 심의회의체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.

- 제9조(탈퇴요청 및 제명) ①종목단체가 정관 제10조 제2항에 따라 탈퇴서를 제출한 경우 체육회는 해당단체를 탈퇴하게 하여야 한다.
 - ②체육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목단체에 대하여는 제명 할 수 있다.
 - 1. 회원의 가입요건을 상실하여 종목단체로서의 존속할 필요성이 인정되기 곤란한 경우
 - 2. 종목단체가 그 자격을 상실하였거나 체육회 정관, 규정, 지시사항을 위배하여 종목단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
 - 3. 임원간의 분쟁, 재정악화, 집행부부재 등의 사유로 종목단체로서 정상적인 사업수행이 불가한 경우
 - 4. 체육회 위상을 심각하게 침해하거나 체육발전을 저해하는 종목단체인 경우
 - ③종목단체가 해산한 경우 체육회의 회원에서 탈퇴한 것으로 본다.

부 칙 (2021.09.24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도체육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 전 체육회가 행한 행위는 이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로 본다.

[별지 제1호 서식]

접수일		겁	브체우히	ਨੀ	의기여	· · · · ·	
접수번호		경북체육회 회원가입 신청서					
	①단체명			② 연	락처		
신청인 (대표자)	③주소						
	④성명(한자)			⑤생	년월일		
	⑥현 주소						
⑦설립 연월일							
⑧설립목	적						
⑨회원 및 지회 현황		회원수			지회수		
⑩아시아/국제연맹과의 관계		명칭			회원가입 여부		

「경북체육회 정관」 제10조제1항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경북체육회 회원 가입을 신청하며, 동 정관 제8조 및「가입・탈퇴규정」에서 정한 권리에 따 른 의무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.

201 년 월 일

신청인(대표자)

인

경북체육회장 귀하

붙임서류

- 1. 단체 소개서(연혁, 종목설명, 활동개요, 조직 등)
- 2. 임원 명단(개인별 취임승낙서 및 이력서 포함)
- 3. 단체장의 신원진술서(별지 제2호서식)
- 4. 단체 규약
- 5. 회원가입을 의결한 대의원총회 회의록
- 6. 경기개요 및 경기규칙
- 7. 선수 및 팀(스포츠클럽 포함) 등록 현황

- 8. 시·군지회 및 산하연맹체 설치 현황
- 9. 시 · 군 · 구지회 설치 현황
- 10. 경기대회 및 동호인대회 개최 실적
- 11.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서
- 12. 수지결산서 및 수지예산서
- 13. 해당 단체의 국제 및 아시아 경기연맹에 관한 참고자료
- 14. 기타(국내대회 개최실적 및 국제대회 입상현황 등)

의 수집 · 이용에 동의합니다.

작 성 자

[별지 제2호 서식]

신 원 진 술 서(약식)

성	명				한 지	+				
주민	등록번호						혈액	형		사 진
등록	부기준지									$(3\text{cm} \times 4\text{cm})$
주	소									
실 7	거 주 지					연	자택전화 : 직장전화 :			
직장명 작						락	후 대 폰 :			
~ 1 		소재지 :						처	E-mail:	
학	학 3	교 명	기 간		전	. 공 학	과	학 위	소 재 지	
7				~						
력				~						
,				~						
경	기관, 업체 및 정당, 사회단체명		기 간		직 책(직급)		상 벌 관 계(일자)			
Ö				~						
력			~							
			~							
해외	거주 국가		기 간		거주 목적		동반 가족			
거주				~						
사실				~						
병	군 별		기 간		병 과	ヹ	종계급		군 번	미필사유
역			~							
배우자	관계 성		명 생년월일		,	관 계	성 명		생년월일	
부모	배우자					子				
- 도 자녀	父						子			
							子			
1.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, 기재사항 누락 및 허위기재 사실이 있을 경우 「국가공무원법」										
등 관계법령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 받았음을 확인합니다.										

2.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「개인정보보호법」제15조(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)에 따라 개인정보

성명

년

월

인(서명 또는 날인)

일

개인정보 제공 동의서(약식)

- 본인은 신원조사기관이 본인에 대한 신원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과 개인정보수집 목적 등 아래 유의사항을 이해하였으며, 이를 위해「개인정보보호법」 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본인의 개인정보를 동법 제15조(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)의 규정 등에 따라 신원조사기관에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.
- 이에 따라, 개인정보 보유기관장은 원활한 신원조사를 위해 본인에 관한 개인정보를 해당 신원조사기관에게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.
- 본인이 서명한 동의서 복사본은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.

유의사항 (개인정보 수집 목적 • 관리방법, 정보제공 동의 거부 가능 고지)

- 수집된 개인정보자료・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는 신원조사 목적으로만 사용되고,「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」에 따라 관리・폐기되며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.
-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정보 제공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이 경우 신원조사를 원활히 진행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.

년 월 일

성명 (서명)

■ 본인 동의

성 명	생년월일	서 명				
0 0	이건 블로	개인정보 제공 동의	민감정보 제공 동의			

개인정보 보유기관장 귀하